#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0일,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3.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4.17.) 상정, 심사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025.6.27.) 상정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위원회(2025.7.2.)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7.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정아의원)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실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제4항신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①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증원 및 추천주체 변경·확대

- O 이사 선임권한을 방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이사 추천주체의 확대 등은 민주적 정당성, 정치후견주의의 탈피 및 정 치적 독립성의 확보 등 여러 가치에 기반한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필 요가 있으며, 이사 정수 증원문제도 이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

#### ② 사장후보추천위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 기존에 사장후보추천위 구성방식이나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 대한 국회 논의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이 대립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③ 이사·사장의 신분보장,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

○ 이사나 사장 등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부당한 해임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강화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재의요구 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한민수의원, 이훈기의원, 최민희의원, 황정아의원, 박민규의원, 노종면의원, 조인철의원, 김현의원, 이해민의원, 이정헌의원, 김우영의원, 서영교의원, 신장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 o 사실상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현행 구조에서 권력을 분산하고, 이사 추천을 국회, 시민사회, 현직 직원 등으로 다원화해 공영 방송이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구조임(김현·이훈기·노종면·한민수위원). 정권에 따라 바뀌는 방송이 아니라,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최민희·한민수 위원)
- o 사장추천위원회를 100인 이상의 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등으로 특정 세력의 독주를 방지하고자 함(김현·이훈기 위원)
- o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로 경영진과 정치 권의 개입을 차단하여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김현·노종면·이정헌 위원).
- o 노조·시민단체 몫 이사 비중이 과도해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이 공 영방송을 장악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박정훈·김장겸·이상휘·최수진 위원).
- o 임직원과 시민사회 등의 이사 추천은 국민이 위임한 기구가 아니므로 대의원칙에 위배됨. 또한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강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등으로 방송사의 인사권 및 경영권 침해와 헌법상 방송편성의 자유를 위반할 위험(최형두·김장겸 위원).
- o 정파적 다툼이 방송 이사회로 직접 유입되고 오히려 정치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신성범 위원).
- o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법개정 추진, 충분한 숙의와 협의가 부재 하였음(최형두·이상휘 위원).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찬성 11, 반대 3)

## 8. 기타 사항

소위 공청회 개최(2025.5.9.)